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5. 20.
행정 위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2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5월 12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95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3. 5. 1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가. 개정이유

- 도시계획법 등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구세감면조례를 행자부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노인복지시설 감면 보완(안 제4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
- 등록문화재 감면 규정 보완(안 제7조)
제2항중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여 감면조례의 재산세 규정과 통일.
-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규정 보완(안 제11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정비.
-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한 감면 규정 보완(안 제15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 정비.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 세정 13430-1308(2002.12.9) 및 13430-11(2003.1.4)
- 입법예고 (2003.1.20~2.9) 결과 : 의견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홍수)

행정자치부의 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감면조례 내용중 일부에 대하여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타 감면조례규정과 통일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구세감면조례 관련 법률의 개정 에 따른 관련조문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첫째, 조례(안) 제4조에 있어서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이미 비과세 조치되고 있었으나, 이 노인복지시설을 일반사업자가 유료로 운영할 경우에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0% 감면하여 왔었으나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보면 ①노인주거복지시설 ②노인의료복지시설 ③노인

여가복지시설 ④제가노인복지시설 등으로 구분되고, 노인주거복지시설중에도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복지주택 등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비 또는 유료 등으로 노인복지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노인복지시설감면조례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만 감면한다는 해석으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이를 시정코자 “유료노인복지시설”이란 용어를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 모두를 50%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둘째, 조례(안) 제7조에서는 국·도·시·군의 지정 및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현행 조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세 감면규정의 여타 조례가 과세표준액이 아닌 “재산세의 50%”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 셋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특별조치법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감면조례(안) 제11조, 제15조의 조문 수정 등 이는 조례표준(안) 개정 및 상위법률의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사항으로 이를 개정하여 상위법률과 조례를 일치시킴이 타당하다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9
----------	----

제출년월일 : 2003. 2. 2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시계획법 등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구세감면조례를 행자부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 감면 조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노인복지시설 감면 보완(안 제4조)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개정하여 개인이 운영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도 감면하여 과세 형성평 재고
- 나. 등록문화재 감면 규정 보완(안 제17조)
 제2항중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여 여타 감면조례의 재산세 규정과 통일
- 다.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
- 라. 재래시장 재개발에 대한 감면 규정 보완(안 제15조)
 “중고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중소기업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조문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 세정 13430 - 1308(2002.12.9)
 - 세정 13430 - 11(2003.1.4)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라. 입법예고(2003.1.20~2.9) 결과 : 의견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유료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시설”로 한다.

제7조의제2항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2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로 한다.

제15조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에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